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992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시민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비엔날레 행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디자인재단 내 전담부서(인력)를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음
- 다.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512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282호)

나. 주요사업(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시장 조성 및 운영
 - 주제, 도시 전시 기획 및 제작 설치
 - 현장프로젝트 기획, 제작, 설치 및 운영
 - 국내외 유관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참여
 - 국제스튜디오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학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동 작업 및 홍보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임
- 서울비엔날레는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한 담론을 다루는 국제행사이자 도시·건축·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이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필요
- 다각적 홍보 및 후원금 등 민간유치 병행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조 례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①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다. 기 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기타 출판업, 주차장운영업, 디자인상품 도·소매업 및 수출, 그 밖에 디자인 및 도시건축 진흥,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공예문화산업 지원사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라.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마.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박미진 (☎7616)